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하남시장(기획조정과)

제출일 : 2026. 7.

1. 제안이유

- 민선9기 시정 로드맵 수립,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정책
자문위원회가 필요함에 따라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권역별 시민대표, 공무원의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남시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3조~안 제4조)
나. 회의 개최 및 의견 청취(안 제7조~안 제8조)
다. 분과위원회(안 제9조)
라. 특별보좌관(안 제10조)
마. 자문단(안 제11조)
바. 정책점검단(안 제12조)

사. 위원회의 해촉 및 수당 등(안 제14조~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유정수)

- 본 조례안은 시의 미래전략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특별보좌관, 자문단 및 정책점검단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자문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나,
- 위원회 정원이 50명 이내이고, 별도로 정책점검단(40명 이내), 특별 보좌관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규모가 상당히 비대해질 수 있기에,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보좌관, 자문단 및 정책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장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촉기준과 운영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 연구·조사실비 및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

급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미래전략 수립 및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규모, 특별보좌관 및 자문기구 운영의 객관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조정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